2014 국가소비자중심
브랜드대상 수상

www.iusell.co.kr
yeongildae.iusell.co.kr

포항고 옆 –
영일대 우방 아이유쉘 입주자 모집공고

특별공급	1순위	3순위
2015. 01. 07 (수)	2015. 01. 08 (목)	2015. 01. 09 (금)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방침에 따라 인터넷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청약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대한주택보증주에서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입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규칙(2013.05.31)개정에 따라 1주택이상 소유하신 분도 청약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2항 규정의 개정(2013.05.31)에 의거 전용면적 85㎡이하 아파트의 경우 가점제 적용비율이 40%로 낮아졌으며, 85㎡초과 아파트는 가점제 적용을 받지 않고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에 따른 순위별 추첨 방식이 적용됩니다.
■ 2009년4월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주거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의 합계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으로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음을 유념하여 청약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07.9.9일이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되는 민영주택으로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점수로 계산하여 분양주택의 당첨자를 선정하는 청약가점제가 적용됩니다.
■ 포항시는 비투기과열지구이며, 본 아파트는 민간택지에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전매제한이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며 비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으로 기존 주택의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 (2012년9월25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 본 아파트는 2012년2월27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공급자격을 포함시뿐만 아니라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거주자까지 확대하여 공급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자 및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당첨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자 중 주택공급신청시 1순의 주택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합니다. 단, 동일 신청자격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포항시 주택건설지역 거주 신청자가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거주 신청자보다 우선하며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지역 거주자로 신청하신 분은 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자로 전산관리하며, 향후 투기과열지구 청약 신청시 1순위 청약신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서는 84.9976㎡(A), 84.9278㎡(B)의 주택형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그 동안 1,2순위만 인터넷 청약을 받고 3순위 청약은 사업주체가 청약접수를 의뢰한 은행 창구에서만 접수를 받았으나, 2011년 9월일 이후부터는 3순위 청약도 금융결제원 인터넷청약시스템 APT2you(www.apt2you.com) 및 국민은행(www.kbstar.com)에 접속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5년 1월 2일입니다.
■ 본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임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포항 영일대 우방아이유쉘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에 의거 포항시 건축과 – 43(2015. 1. 2)호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학산동 6-7외 16필지**
■ **공급규모 : 지하 2층 ~ 지상 20층 총 374세대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특별공급세대 총 118세대 : 일반특별공급 : 36세대, 다자녀 특별공급 : 36세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 36세대,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 10세대]
■ **대지면적 : 16,260.00㎡**
■ **공급대상**

(단위 : ㎡, 세대)

비 고	주택관리번호	주택형	세대수	공급면적			기타공용	계약면적	대지지분	최저층(1층) 세대수
				주거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소계				
민영 주택	2015000005-01	59.9454	55	59.9454	20.8200	80.7654	28.8486	109.6140	31.6996	3
	2015000005-02	84.9976(A)	106	84.9976	28.2198	113.2174	40.9049	154.1223	44.9475	5
	2015000005-03	84.9278(B)	213	84.9278	29.2773	114.2051	40.8713	155.0764	44.9105	12

■ **공급대금 및 납부일정**

(단위 : ㎡, 천원)

주택형	해당동	층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10%)		중 도 금 (60%)					잔금 (30%) 입주지정일
				대지비	건축비	계	1차	2차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6차(10%)	
							계약시	2015.02.23	2015.05.20	2015.11.20	2016.05.20	2016.11.21	2017.04.20	2017.08.21	
59.9454	101동 104동	1층	3	48,753	127,947	176,700	10,000	7,670	17,670	17,670	17,670	17,670	17,670	17,670	53,010
		2층	3	48,753	131,747	180,500	10,000	8,050	18,050	18,050	18,050	18,050	18,050	18,050	54,150
		3층	4	48,753	137,447	186,200	10,000	8,620	18,620	18,620	18,620	18,620	18,620	18,620	55,860
		기준층	45	48,753	141,147	189,900	10,000	8,990	18,990	18,990	18,990	18,990	18,990	18,990	56,970
84.9976 (A)	101동 103동 104동	1층	5	68,931	176,769	245,700	10,000	14,570	24,570	24,570	24,570	24,570	24,570	24,570	73,710
		2층	5	68,931	182,069	251,000	10,000	15,100	25,100	25,100	25,100	25,100	25,100	25,100	75,300
		3층	6	68,931	189,969	258,900	10,000	15,890	25,890	25,890	25,890	25,890	25,890	25,890	77,670
		기준층	90	68,931	195,269	264,200	10,000	16,420	26,420	26,420	26,420	26,420	26,420	26,420	79,260
84.9278 (B)	101동 102동 103동	1층	12	69,038	178,262	247,300	10,000	14,730	24,730	24,730	24,730	24,730	24,730	24,730	74,190
		2층	12	69,038	183,562	252,600	10,000	15,260	25,260	25,260	25,260	25,260	25,260	25,260	75,780
		3층	12	69,038	191,562	260,600	10,000	16,060	26,060	26,060	26,060	26,060	26,060	26,060	78,180
		기준층	177	69,038	196,862	265,900	10,000	16,590	26,590	26,590	26,590	26,590	26,590	26,590	79,770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 4항에 의거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였으며, 동 규정에 의거 중도금 납부 일자는 건축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공통사항**
- 상기 주택형별 공급대금은 주택법 제38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총금액을 기준으로 포장시 분양가 심사위원회가 의결한 층/백위에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차등을 두어 당사에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임.
- 아파트단지 분양홍보관 방문 내에서 각 항목별 층/백위별 공급평과 기업의 영업이윤 보조 등을 위해 사후검증은 실시하지 않음.
- 상기 공급대금에는 각 주택형별 공피 소유권이전등기비용, 취득세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이하 단수조정 등으로 등기책정시 상이할 수 있음.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지하주차장 면적으로 산정된 주거공용면적 상이할 수 있음.
- 사업주체가 정해져 대한주택보증주가 지정하는 지에게 주택건설사업에 관한 법률,제9조 규정에 의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
- 분양책정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로 하여금 분양보증을 받은 세대에 한하여 분양보증서를 교부하여 줌.
- 중도금은 당첨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한 60%이상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이상 되지 않은 경우에는 동별 건축공정이 30%이상 되는 때로 기준으로 하루 later 각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며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발코니확장**

주택형	확장유무	비 고
59.9454	거실, 침실1, 침실2, 침실3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8조 6항 5의2, 5의3, 5의4에 의거하여 본건 분양주택은 전세대 발코니 확장을 원칙으로 분양하며 발코니 확장에 대한 입주자의 별도 부담은 없음. (외부 발코니 창호 제외)
84.9976(A)	거실, 침실1, 침실2, 침실3, 침실3	
84.9278(B)	거실, 침실1, 침실2, 침실3, 부부욕실, 드레스룸	

※ 상기 84.9278B타입주택형 중 101동 1301호의 거실부분은 확장되지 않으며 거실 천장이 발코니에는 세시가 설치되지 않음.

■ 발코니 확장은 실내측도, 생활습관 등에 따라 발코니창호, 기타부위 등에 결로현상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하자보수 등의 이의제기를 사업주체에게 할 수 없음.
■ 발코니 확장에 관련된 마감재의 품질, 품격 등의 사유로 인해 마감자재의 품목 및 품질 등이 변경 될 수 있음.

■ **공동주택 마이너스 옵션**
- 공동주택분양가격의산정등에관한규칙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에서제 벽지 조명, 위생기기, 타일, 창호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 시공할 품목군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 받을 수 있으며, 마이너스옵션 부분은 입주자모집공고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내부 기준에 따라 계약체결 할 수 있음(단, 개별품목 선택은 불가함)
- 본 아파트 코트로부터의 '동별 배정소세대 에한 기본선택품목제시 시행시 입주자 선정절차'중 당첨자 선정 발표시 동/호수까지 배정한 후 당첨자가 계약체결시 해당 동/호수에 대하여 기본선택품목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하는 방식을 채택함

품 목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기본제공 품목
① 문	목문상하이라인 / 문선 / 목재문틀(몰딩) 및 목재문턱, 각종 하드웨어일체	목재문틀(가몰)/목상문하부발/세대현관문 및 문력방화문틀 및 문력/방화문틀 및 문턱/PL창호
② 바닥	강마루 / 타일/강화마루 / 현관바닥재 및 디딤판 / 현관매루개틀 / 발코니,화장실,다용도실바닥타일	바닥난방배관 + 시멘트 몰탈 포함(난방배관부위)
③ 벽초	초배지 / 벽지 / 벽체마감 (아트월 타일 도장 하지판 /경량벽체 / 걸레받이 / 발코니수전류 / 발코니 벽도장	시멘트몰탈 / 단열재 / 석고보드 / 발코니,난간
④ 천정	초배지 / 천장지 / 천장몰딩 우물천장 인테리어 마감 / 우물천장 몰딩 및 MDF판발코니 천장도장	천장몰 위 석고보드 / 커튼박스
⑤ 육실	욕실바닥 및 벽타일타일공을 위한 미장포함(내지석/천장재/새부서스욕실/욕실/발코니/욕실/발코니/욕실/발코니